

WEMADE

공정거래 정책

제.개정 이력

개정번호	일자	제.개정 내용	작성자
1.0	24.05.30	제정	ESG 팀

목 차

제 1 조 [목적 및 적용대상]

제 2 조 [원칙]

제 3 조 [공정거래 관리 체계]

제 4 조 [자유경쟁 추구]

제 5 조 [법규의 준수]

제 6 조 [상생 협력]

공정거래 정책

제정 2024.05.30

제 1 조 (목적 및 적용대상)

- 위메이드(이하 "회사"라고 한다)는 경영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,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 정착에 앞장서며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정책(이하 "본 정책"이라 한다)을 제정한다.
- 본 정책은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된다.

제 2 조 (원칙)

- 회사 및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.
- 회사는 공정거래 문화 확립을 통해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손상, 기업 신용 하락 등 비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한다.

제 3 조 (공정거래 관리 체계)

- 회사는 공정거래를 실천 및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.
- 회사는 본 정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.
- 공정거래 관련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본 정책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및 처벌할 수 있다.

제 4 조 (자유경쟁 추구)

- 회사는 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거래에 적극 참여한다.
- 회사 및 임직원은 부당한 공동행위 (담합행위, 경쟁사 정보 수집 또는 교환 행위 등) 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 (계열회사를 위하여 부당하게 비계열회사와의 거래 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,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)를 근절한다.

제 5 조 (법규의 준수)

- 임직원은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 및 지역의 거래 관습을 존중하고,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(약칭: 공정거래법)」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(약칭: 하도급법)」,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(약칭: 청탁금지법)」, 「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(약칭: 표시광고법)」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.
- 임직원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거나 허위·과장광고 및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.
- 임직원은 비즈니스 파트너 의사에 반하는 구입 행위를 강제하거나, 거래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의 요구를 금지한다.

제 6 조 (상생 협력)

- ① 비즈니스 파트너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.
 -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의 거래 조건 및 거래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하며, 그 과정에서 획득한 영업비밀을 준수한다.
 - ③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을 추구한다. 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거래에 적극 참여한다.
-